

창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나5699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나5699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17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8. 3. 6.

판결 선고 2018. 3. 2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17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원군 C 전 2,612m²에 관하여,

- 1) 제1심판결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8, 9, 10, 11, 12, 13, 14,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07m² 지상 주목나무를 수거하고, 위 (ㄴ) 부분 807m²를 인도하고,
- 2) 제1심판결 별지1 도면 표시 6, 7, 8,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5m² 지상 소나무 석축과 대리석 계단 및 테라스를 철거하고, 위 (ㄷ) 부분 35m²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8,316,298원 및 2017. 4. 15.부터 위 가의 1)항 기재 (ㄴ) 부분 807m² 및 2)항 기재 (ㄷ) 부분 35m²의 인도일까지 연 1,734,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평균

판사항일준

판사박성규

별지